

소 장

원 고 참 여 연 대

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신관 3 층
대표자 김 중 배

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

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-7 태양빌딩 8층

담당변호사 최은순, 이용철, 이석범, 한정화, 이상호,
이현용

피 고 국회사무총장
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

청 구 취 지

1.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. 9. 25.에 한 '1999년도 국회예비금,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지출결의서, 지급결의서 및 기타 유사명칭의 서류, 지출증빙, 현금출납부 등 장부일체'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당 사 자

원고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시민단체로서, 1998. 5. 정부
터는 위 단체의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산하에 정보공개사업단을 두고 1998. 1. 1.
부터 시행 중인 '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' 상의 정보공개체도를 적극 이용하
여 행정감시 및 예산감시운동을 벌여 우리 사회를 투명한 사회, 맑은 사회로 만들
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피고는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.감독하
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진 자
입니다.

2.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배경과 경과

원고 참여연대는 국회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비금과 각 위원회 활동비
지출에 관한 예산지출내역과 그 증빙자료를 보아 국회 예산 지출 중 무용한 사용이
나 낭비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0. 5. 24. 청구취지 기재 정보에 관하여 정
보공개청구를 국회의장에 대하여 하였습니다(갑제 1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서).

그런데, 2000. 6. 12. 피고는 원고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내용을 일방적으로 '1999
년도 국회예비금,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'이라고 줄여 정리한 다음에 예비금과 위
원회 활동비 지출내역을 2장의 용지에 정리한 내용을 사본으로 우송한 다음에 이를
정보공개라고 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습니다(갑제 1호증의 2 정보공개 결정
통지서). 그러나, 원고는 피고가 정보공개라고 하면서 한 정보가 피고에 의해 일방
적으로 요약정리된 내용으로 그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이 없어 이를 공개
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.

그리하여 2000. 9. 6. 원고 참여연대는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하기에 이
르렀는데(갑제 2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서),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자가 공개청구
한 내용은 원고가 종전 청구한 것을 재차 청구한 것으로 당시 회신한 내용을 참고
하기 바람에 지출증빙서류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

1항 제 1호, 제 2호, 제 6호 및 제 7호의 규정에 의거 이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(갑제 2호중의 2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).

3. 피고의 거부처분의 위법·부당성

그러나, 피고가 내세우는 '위 법률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, 제 2호, 제 6호 및 제 7호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가 불가하다'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·부당합니다.

특히,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예산 중에 예비금을 두고(동법 제 23조 제 3항), 이를 사무총장이 관리하되,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고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으로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(동조 제 4항).

그런데, 국민이 자신들이 대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예산의 사용에 대하여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, 이러한 국회예산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추상적인 법조문만 들어 비공개처분한 것은 위법·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.

특히, 피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7조 제 1항 제 1호 사유를 들고 있으나 어느 규정에도 이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.

또한 피고는 동항 제 2호 사유를 들고 있으나 오히려 국회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익에 보탬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.

다음으로 피고는 동항 제 6호의 사유를 들고 있으나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으며 만약, 일부 부분이 그렇다면 부분공개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.

마지막으로 피고는 동항 제 7호 사유를 들고 있으나 어느 부분이 법인관련이나 개인의 영업관련 자료인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일부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면 부분공개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.

따라서,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왜곡해석한 결과이자,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자체의 목적을 무시하고 국회가 시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·부당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피고의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·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, 원고는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강제 1 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서
1. 2 정보공개결정통지서
1. 강제 2 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서
1. 2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
1. 기타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사본 1통

1. 위임장

1. 담당변호사 지정서

1. 납부서

2000. 12.

원고소송대리인

범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

담당변호사 최 은 순

서울 행정 법원 귀 중